

## 대학원학칙 정책대학원 시행세칙

2004. 3. 1 제정  
 2005. 3. 1 개정  
 2007. 9. 1 개정  
 2009. 8. 1 개정  
 2012. 9. 1 일부개정  
 2013. 9. 1 일부개정  
 2014. 3. 1 일부개정  
 2014. 12. 26. 일부개정  
 2015. 9. 1. 일부개정  
 2021. 9. 1 일부개정  
 <정책대학원 행정실>

-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본교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함)이 정책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사회과학의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더욱 심오하게 교수하고 연구함으로써 정치·경제 및 행정 각 분야의 실제업무와 관련된 전문가와 지도급 실무자를 육성 또는 재교육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수업) ①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공휴일 수업과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② 매학기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 제 4 조 (재입학의 제한) 재입학은 학과가 제적이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 제 5 조 (학과의 변경) 입학 후 학과는 변경 할 수 없다.
- 제 6 조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사학위과정 또는 다른 대학원과 공동 개설한 교과목의 수강은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학점교류를 위한 수강신청은 소속대학원 학과 주임교수와 개설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7 조 (수강신청 정정)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 할 수 있다.
- 제 8 조 (이수지정과목) ① 석사과정 입학자의 전공분야가 학사과정의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선수과목의 지정은 소속학과 주임교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수과목의 이수학점은 계열별로 최대 2과목으로 한다.  
 ③ 선수과목 지정자는 수강신청시 그 지정 과목을 포함하여 5과목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삭제](2014.3.1)
- 제 9 조 (학점인정) 본 대학원에서 연구과정이나 석사과정에 재학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재학 또는 수료한 자가 석사과정에 다시 입학하였을 경우, 해당학과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미 이수한 과목 중에서 1학기 수료자에게는 1과목(2학점), 2학기이상 수료자에게는 2과목(4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2과목(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0조 (학점교류) ① 교내 학점교류 협약에 의한 학점교류 자격은 소속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료하고,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 중 거주지가 변동되어 소속 대학원에서 학점 취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② 학기 당 6학점 범위 안에서 수강 할 수 있으며, 졸업시까지 통산 12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논문세미나 및 논문지도 과목은 소속대학원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③ 학점교류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상호 학점교류를 하고자 하는 대학원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 11조 (지도교수) 논문트랙을 신청하는 자는 당해 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학기 이상 연구 및 논문작성에 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12조 (지도교수 변경) ①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2. 학과 주임교수 및 신\*구 지도교수의 승인서

제 13조 (학위청구 자격) ① 본 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에서 정한 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을 이수하고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이며 본 조 ②항 또는 ③항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석사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논문트랙을 신청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경우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 5학기 이상 등록하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③ 논문트랙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경우 석사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1. 5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본 대학원 교과과정 일람표에 따라 8학점(4과목)을 추가로 이수한 자.
2. 졸업시험에 통과한 자.

제13조의 2(논문트랙 신청자격, 절차 및 시기) ① 논문트랙을 신청하는 자는 4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하며 당해 학기 초에 논문트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트랙의 신청 및 포기는 각각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학기 초 신청기간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 3(졸업시험) ① 졸업시험의 응시자격은 5학기 이상 등록하고 당해 학기에 30학점 이상 취득예정자로서 이수 성적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로 한다.

② 졸업시험의 응시절차 및 시기, 출제, 합격, 사정 등은 본 대학원 종합시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제17조 ④항은 제외한다.

제 14조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연한) 석사학위청구를 위한 논문 제출은 수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횟수는 1회, 연장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한다.

제 15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절차 및 시기)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출 자격을 갖추었다는 증빙서류, 논문원고 3부와 함께 논문심사료를 첨부하여 학사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기는 전기는 5월 말일, 후기는 1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6조 (학위청구논문 작성 용어) 석사학위논문은 국·한문 혼용(원어 포함)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

- 야 한다.
- 제 17조 (종합시험) ① 종합시험 과목은 각 학과별 전공과목과 외국어로 한다. 다만, 외국어 시험은 사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은 필기고사에 의하며, 전공과목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2인이상의 시험 위원이 주관식으로 출제하여, 선택된 문제를 출제한다.  
 ③ 종합시험의 합격선은 70점으로 하며 응시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4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이수하여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는 종합시험을 면제한다.
- 제 18조 (종합시험 응시자격)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당해 학기에 20학점 이상 취득예정자로서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로 한다.
- 제 19조 (종합시험 응시절차 및 시기)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 제 20조 (논문심사위원회) ① 논문심사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및 해당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맡으며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 제 21조 (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의 최종판정은 합격, 불합격으로 하며, 합격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 22조 (학위수여 심의) 종합시험, 졸업시험, 논문심사의 결과 등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 23조 (장학금) ① 장학생 선발은 가계가 곤란한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학성적이 극히 우수하거나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책대학원 장학금 지급세칙에 정한다.
- 제 24조 (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별지 서식 1]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명칭 또는 교과목 개설기간, 장소 및 수강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정한다.
- 제 25조 (연구생) ① 본 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 교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은 석사학위과정과 지원자격이 같으며, 본 대학원이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에 입학할 수 있다.
- 제 26조 (연구기간 및 연구과제) ①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일람에 의한다.
- 제 27조 (대학원위원회의 회의) ①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한다.  
 ② 그 밖에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위원회설치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 28조(휴학기간) 휴학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할 수 있으며, 통산 휴학기간은 3학기로 한다.
- 제 29조(학기별 취득학점 상한) 한 학기 취득학점 상한은 8학점 이내로 한다.
- 제 30조(수료를 위한 최소이수학점) 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논문트랙 26학점 이상(논문세미나, 논문지도 포함), 학점트랙 30학점 이상(논문세미나, 논문지도

제외)으로 한다.

② 연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12학점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신설, 제9조 내지 제27조 조번호 변경)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 개정)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6조 ③항 문구 변경, 제8조 ④항 삭제, 제11조 문구 변경, 제13조 문구 변경 및 ②항, ③항신설, 제13조 2 신설, 제13조 3 신설, 제15조 ②항 문구 변경, 제17조 ④항 신설, 제19조 ②항 문구 변경, 제22조 문구 변경)

2.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 입학자도 수료자를 제외하고 개정 세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3조의 2, ②항)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3조 ①항 개정, 제14조 개정, 제28조 내지 제30조 신설)

2. (경과조치) 제13조, 제28조 내지 제30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3항 삭제, 제3조의1 삭제)

[별지서식 1]

제 000 호

# 증 서

성 명 ○ ○ ○  
0000년 00월 00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에서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200 년 월 일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원장 ○ ○ 박사 ○ ○ ○

위의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200 년 월 일

고려대학교 총장 ○ ○ 박사 ○ ○ ○